2021 순경1차 형소법 해설 정통 선생

1. 정답③

① 헌법재판소 2017. 11. 30 2016헌마503

② 대법원 1968. 2. 27. 선고 68도64 판결

③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④대법원 1993. 12. 3. 자 92모49 결정

2. 정답③

㉠ 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국가의 의무이므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피의자신문시 피고인신문시 그 대상이 피의자 피고인으로 한정되어 있다.(제244조의3 제1항, 제283조의2 제2항 참조) 따라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대리인은 진술거부권의 고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개개나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제283조의2 제1항) 성립의 진정도 거부할 수 있다.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3. 정답②

①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③ 제232조 제2항

④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4. 정답①

①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②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373 판결

③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

④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3926 판결

5. 정답①

①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총조사시간은 12시간이지만 실제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수차 강조하였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③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

④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0조

6. 정답③

①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② 제200조의4 제3항

③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④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7. 정답④

①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②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③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④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제218조),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8. 정답④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1항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③ 제197조의3 제1항 5항

④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불송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9. 정답④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91 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608 판결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판결).

10. 정답①

①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산업협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5항 본문은 "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선거범죄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선거일 후'부터, 선거일 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 즉,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각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당일'이 아니라 '선거일 다음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선 위 조항의 문언에 부합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도17404 판결)

②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3245 판결

③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153 판결

④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11. 정답 ④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7호 제외사유

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 결격사유

③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호 제외사유

④ 금고이상의 확정판결을 받고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가 결격사유이므로 경과하였다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호)

12. 정답②

① 제294조4 제1항

② 재판장이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제294조4 제4항 제6항)

③ 제163조의2 제1항

④ 규칙 제84조의5 제1항

13. 정답③

①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2623 판결

②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③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대법원2011.11.24. 선고 2011도11994 판결)

④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985 판결

14. 정답①

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제266조의3 제5항)

② 제266조의4 제1항

③ 제266조의4 제5항

④ 제266조의4 제1항 제3항

15. 정답②

①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②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③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016 판결

④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

16. 정답③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위 증거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아닌 원진술자는 증거동의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 제318조의2

17. 정답③

①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

②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③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

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당연히 임의성은 전제되어야 한다.

④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18. 정답①

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판결 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나 이를 판결 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②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320 판결

③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8453 판결

④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19. 정답②

①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540 판결

②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의 형보다 더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환송 후에 공소장 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법리를 같이 한다.(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105 판결)

③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8도1736 판결

④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3150 판결

20. 정답①

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조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라 함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경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 13. 자 96모51 결정)

② 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

③ 대법원 1984. 4. 13. 자 84모14 결정

④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도11812 판결

2021 순경1차 총평

○ 단원별 출제 분포도

이번 시험은 지난번 시험이 수사와 증거에 집중되었던 것에 비하여 소송의 주체 공판절차 특별형사절차등이 골고루 출제되었다.

통합형사법으로 장차 과목개편이 예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이에 맞춰 출제되었던 지난 시험과는 달리 이번 시험은 지난 시험 이전으로 출제의 범위가 회귀하면서 수사와 증거만 공부했던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었으나 공판이나 주체 상소 및 특별형사절차부분의 문제는 평이하여 이를 대비했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문제인 듯 하다.
다만 증거 판결 상소에 다소 생소한 지문들이 출제되어 수험생들에게 양자 택일을 강요하였던 듯하다.

다만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른 준칙 즉 검경수사권조정의 협력에 관한 준칙이 3문제나 정답에 출제되면서 이를 대비하지 않은 수험생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듯하다.
이부분에 대하여 따로 특강까지 하면서 대비시켜드렸는데 이 강의를 보지 않았다는 학생이 있어서 충격이었다.

올해 최신판례는 올해 판례가 하나정도 출제되었고 작년이나 3년간 판례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 총평 (난이도: 중상)

금번 시험은 난이도는 무난 했다고 생각한다.

출제범위가 수사나 증거에 국한되지 않아서
이를 제외하고 공부하였거나.

개정법 특히 검경수사협력에 관한 준칙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불의타가 있었을 듯 하지만 이를 대비하였다면 무난한 시험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다만 생소한 지문이 조금 있었고 지문이 평소와 다른 곳에 함정이 있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중상정도로 나왔다고 본다.**

○ 앞으로의 수험 대책

경찰시험은 수사와 증거만 보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늘 드리는 대답은 수사와 증거를 중심으로 보시되 나머지 부분을 등안시 하시면 안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시험도 이번시험과 같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므로
적어도 시험에 나오는 중요포인트들은 교재가 아니더라도
기출문제 암기노트 오엑스를 통하여 충분히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정법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지 않는 학생이 있다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에듀윌의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특히 개정법특강이나 최신판례 오엑스도 빠지지 않고 따라오시면
반드시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험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